

2025년 휴머노이드로봇 실증 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휴머노이드로봇 실증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 분야 및 대상
 - 1-3. 지원 규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4. 신청자격 및 사전 지원제외 기준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5-1. 신청방법
 - 5-2. 평가절차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문의처
9. 기타 유의사항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휴머노이드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초기 단계에 대학·기업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안전 규제 관련 사항 선행 발굴

1-2. 지원 분야 및 대상

- (지원 내용) 휴머노이드로봇 플랫폼 제작비(주관/공급기업), 실증을 위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참여/대학·수요기업)

<국비(현금) 기준 지원범위>

예산		주관(공급기업)	참여(대학)	참여(수요기업)
직접비	인건비	편성 불가	편성 가능	편성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편성 불가	연구시설·장비 임차비에 한정	연구시설·장비 임차비에 한정
	재료비	휴머노이드로봇 플랫폼 제작비	지그 제작 등의 재료비에 한정	공정환경 개선, 지그 제작 등의 재료비에 한정
	연구 활동비	편성 불가	편성 가능	편성 가능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	직접비의 5% 이내	직접비의 5% 이내

*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현물 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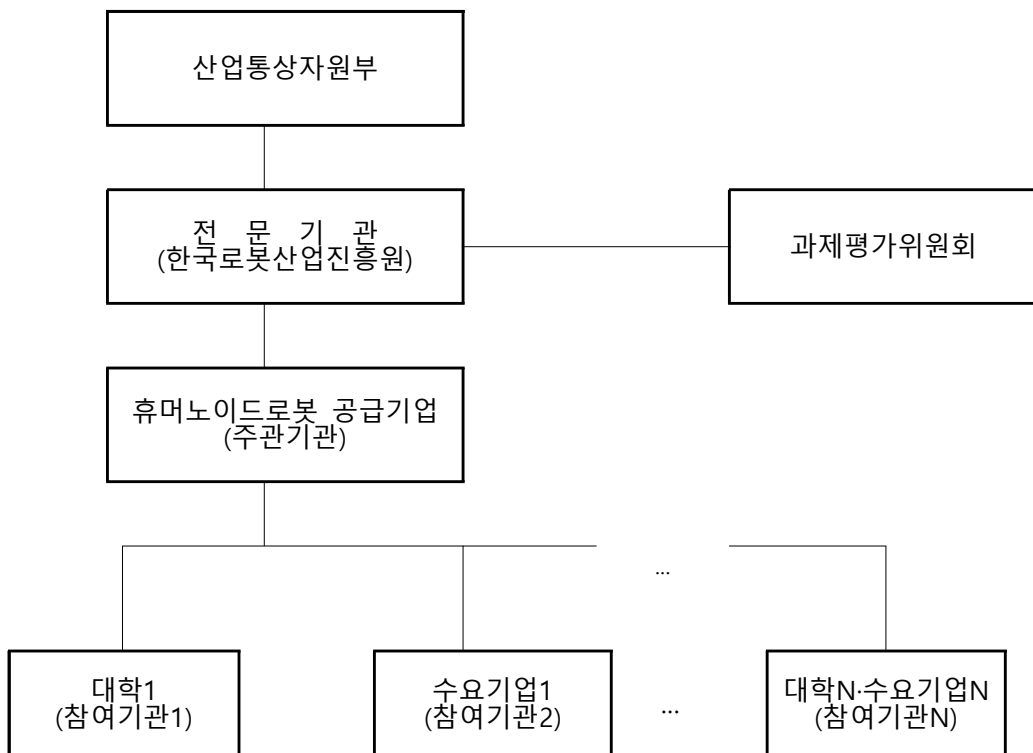
- (지원 유형) ①공급기업-대학, ②공급기업-대학-수요기업으로 구분
 - (①공급기업-대학) 공급기업은 R&D·제품개선·현장적용 단계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대학은 실증연구를 통한 솔루션 확보
 - * 공급기업의 복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복수의 대학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②공급기업-대학-수요기업)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현장실증 단계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대학은 실증을 통한 솔루션을 확보하여 수요기업 대상 현장 검증 추진
 - * 공급기업의 복수의 수요기업 현장실증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복수의 대학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1-3. 지원 규모

- (지원 예산·기간) 14.1억원(과제 3개 내외, 과제별 5억 이내), '25.9 ~ '25.12.(4개월)
- (지원 과제 수) 신청규모 및 신청 수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

2. 사업 추진체계

-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사업비 지원기준

① 사업비 구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국비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국비지원금은 주관·참여기관 총 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제한 없음

②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과제참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현금 및 현물 계상 가능)
- 주관기관은 휴머노이드로봇 플랫폼 제작 비용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실증용 휴머노이드로봇 제작을 위한 단순 가공·조립·제작, 모의 실증환경 제작 등에 한함
 - 이때,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간접비는 해당 기관 직접비의 5% 이하로 산정
 - 영리기관인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신청자격 및 사전 지원제외 기준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기업(휴머노이드로봇 공급기업)
- 참여기관 : 대학, 기업(휴머노이드로봇 수요기업)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참조

○ 사전 지원제외 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신청자격 검토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참조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선정평가 이후에라도 상기 사전 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공고기간) '25. 8. 4.(월) ~ '25. 8. 22.(금)
- (접수기간) '25. 8. 11.(월) ~ '25. 8.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불가), 사업관리시스템(PMS)
 - 사업관리시스템 웹주소 www.kiria.org/pms
 - 접수 마감 당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시 유의 바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 까지 제출완료 필수(임시저장 등 불인정)
 - 접수마감 당일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 불가시 제출 서류 일체 및 오류증빙을 압축하여 제출
 - * 화면캡처 영상 증빙, 전산담당자 통화내역 등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필수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주관	참여	비고
1	사업계획서	공통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양식 3
4	참여의사 협약서	○	○	양식 4
5	현금·현물출자 협약서	○	○	양식 5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7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8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날인본 표지 포함) ¹⁾	○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10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	○	재직(학)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1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	양식6
12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제작 비용 증빙서류	○	-	자유 양식
13	기타 실증대상 로봇 관련 자료	-	-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5-2. 평가절차 및 기준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
- (사업비 적정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는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인건비, 재료비, 소요량의 적정성 등 검증)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사업목적의 명확성 (20)	○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 사업 목적의 부합성	10
추진계획의 적정성 (50)	○ 추진 전략 적정성	10
	○ 추진 계획의 구체성(실증 연구계획)	30
	○ 사업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인건비, 재료비 등)	10
수행기관 역량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조직 역량	10
	○ 실증 연구인력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경제성 (10)	○ 사업 기대효과	5
	○ 경제성(실증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5
합계		100

- (우대가점) 주관기관(기업) 또는 참여기관(대학, 기업) 1개 이상이 K-휴머노이드 연합 소속일 경우 각 1점(주관/참여 가점 중복 적용)
※ 감점 사항은 별도 없음
- (지원대상 과제)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제외”로 분류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한 경우 ①추진계획의 적정성 ②사업성 및 경제성, ③사업목적의 명확성 순으로 우선 선정
- (이의신청)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제41조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 관리지침」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7. 추진일정

사업공고	8월 4일 ~ 8월 22일 (19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공고 업로드
↓		
과제 접수	8월 11일 ~ 8월 22일 18: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8월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서류·신청자격 검토 등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8월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평가 및 사업비 심의
↓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이의신청서 접수 접수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9월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협약 진행 ▪ RCMS를 통한 사업비 지급

* 추진 일정은 접수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사업관리시스템) PMS(접수센터) 상담 고객센터(070-4047-7287)
- (사업공고 내용 문의) 휴머노이드로봇센터(053-210-9692, joelryu@kiria.org)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진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임
 - (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 (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www.rcms.go.kr)
- 발표평가 일정은 8월 4주차에 진행되며,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